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보양 보상 제도 신설 >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24)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재요양 보상 제도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
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요양 보상 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요양 보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4조의2(재요양) ①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u> <u>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선원법」 제94조¹⁾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등의 요양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선박소유자의 비용은 「선원법」 제106조²⁾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원등³⁾과 근로자⁴⁾를 보호하려는 「어선원 및 어선 재

-
- 1)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선원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 3) 어선원등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를 말함.

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함)⁵⁾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⁶⁾상의 어선원보험 및 산재보험과 현행법에 따른 선원재해보험과 비교하여 보면,

[어선원보험·산재보험·선원재해보험 비교]

구분	어선원보험	산재보험	선원재해보험
근거법률	「어선원재해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사업주체	수협중앙회(정부위탁)	근로복지공단(정부위탁)	선원법시행령 제32조의 민간보험(공제)
가입대상	연근해 어선소유자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	상선, 원양어선 선박소유자
가입자수	17,836	-	2,388
피보험자	승선 어선원 * 적법취업 외국인 포함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적법취업 외국인 포함	승선 선원 * 적법취업 외국인 포함
가입형태	의무가입(3톤이상) 임의가입(3톤미만 가족승선 등)	의무가입	의무가입
가입금액	어선원의 임금전액	근로자 임금전액	선원의 임금전액
정부지원	톤급별 차등지원(15~71%)	사용자 100% 부담	사용자 100% 부담

□ 어선원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요양보상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받은 어선원 또는 근로자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4)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5)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의6(재요양)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재해보험에는 ‘재요양 보상 제도’가 없어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부상·질병재활 시 재활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어선원보험·산재보험·선원재해보험간 보험급여의 종류]

종류	지급사유	어선원보험		산재보험	선원재해보험
요양 급여	부상·질병 치료비	직무 상	요양비 전액	동일	요양비 전액
		승무 중 직무 외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없음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상병 급여	요양 중 생계비 (통상임금)	직무 상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최저임금 이상)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 저소득근로자, 고 령자 등 세분화)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승무 중 직무 외	3개월 이내 : 통상임금의 70% (최저임금 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시 미지급	없음	3개월 이내 : 통상임금의 70% *고의 또는 중대 과실시 미지급
장해 급여	장애가 발생 남은 경우	직무 상	승선평균임금×산재법의 장애등급 및 보상일수 * 1급:1,474일분 ~ 14급 55일분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승선평균임금×산재법의 장애등급 및 보상일수 * 1급:1,474일분 ~ 14 급: 55일분
		승무 중 직무 외	-	-	-
재요양		(법 제23조의6)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치유된 부상·질병이 악화되어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요건) 1. 부상·질병간 상당인과관계 2. 부상·질병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등 3. 부상·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4. 재요양통해 호전 등의 치료효과 (절차) 중앙회에 재요양 신청		(법 제51조) 좌동 (요건) 1. 부상·질병간 상당인과관계 2. 부상·질병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등 3. 재요양통해 호전 등의 치료효과 (절차) 공단에 재요양 신청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요양보상과 함께 요양보상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받은 선원이 그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상선,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치료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이처럼 재요양 제도에 관한 타 입법례를 감안하고, 선원의 보호 및 권익증진, 부상 또는 질병 치료 이후 선원의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돕기 위한 요양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선원과 어선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재요양 보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수는 현재 2,388건임. 참고로 어선원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수는 현재 17,836건이고, 재요양 보험 건수는 최근 3년간 약 139건, 총 보험급여에서 재요양 비중은 17.7%에 해당함.

[재요양으로 인한 어선원 보험급여 통계]

(단위: 건, 원)

연도	재요양 승인건수	재요양 보험급여(B)	총 보험급여(A)	재요양 비중(B/A)
2020	175	2,381,933,038	9,501,263,072	25.1 %
2021	127	1,026,238,803	5,449,152,175	10.8 %
2022	114	1,645,165,257	5,984,561,289	17.3 %

□ 다만, 선원재해보험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가입하는 민간보험(공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요양 보상 보험 도입 시 민간 재요양 보험 개발 및 선박소유자의 변경가입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시행일(공포 후 6개월)보다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개별 가입하는 민간보험체제로 운영되는 선원재해보험과 어선원 보험 및 산재보험을 비교하면,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는 어선⁷⁾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하고⁸⁾,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하고⁹⁾,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¹⁰⁾으로 하여금 동법의 적용받는 사업의

7) 「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제16조(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9) 「산재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¹¹⁾ 어선원보험(수협)과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은 정부위탁을 받아 단일 주체가 운영하고 있음.

[재해보험 신청 및 결정 절차 비교]

구분		어선원보험	산재보험	선원재해보험
신청		어선원·유족 등	근로자·유족 등	선원·유족 등
접수		수협 회원조합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지사 등	선주가 가입한 재해보험사업자(민간) ※ 현재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민간 재해보상보험사는 한국해운조합, 선주상호 보험조합, 동부화재, 삼성 화재, 외국보험사 등 약 20여개사로 나타남. (해양수산부 자료)
재해조사		수협중앙회 지역본부 *직무상·직무 외 재해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전 심의 필요	재해보험사업자 *직무상·직무 외 재해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결정		수협중앙회 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재해보험사업자
이의신청	심사	보험심사위원회 (수협중앙회) *변호사, 노무사, 보험전문가, 의학전문가 등 18명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노동관계, 보험사업 등 부문별 전문가 등 150명 이내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항만관청) *자체 의학 자문 등
	재심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변호사, 노무사, 보험전문가, 의학전문가 등 15명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관계, 보험사업 등 부문별 전문가 등 90명 이내	선원노동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4인으로 구성
사법기관		행정소송		

10) 「산재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한국해운조합·원양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선원노련의 다음과 같은 의견(참고 1, p. 11) 등을 고려하여, 재요양 보험 개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노사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요약

관계기관	의견
한국해운조합 및 원양산업협회 등 선주단체	○ 현재 민간보험회사 등이 운영하는 선원의 요양보험은 재요양에 관한 상품이 없어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 등의 상품 개발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 재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최초 요양과 관련한 부상·질병이 원인 인지에 대한 선원과 민간보험회사 등과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¹²⁾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회사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 선원의 재요양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선원의 재요양 비용 부정 수급에 관한 처벌 규정¹³⁾ 신설, 재요양 제도 도입 시 보험요율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므로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¹⁴⁾하며, 외국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선사도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 및 타국 선원법과의 영향도 검토할 필요¹⁵⁾가 있다는 입장임.
선원노련	○ 재요양 제도에 찬성하면서 선원이 재요양할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¹⁶⁾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요양 비용을 미지급할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¹⁷⁾ 등에 재요양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2)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은 일반적으로 7~18개월 단위의 조업기간 동안 회사와 선박을 이동하며 근로하는데,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전 선박(A회사)에서 발생했는지, 현 선박(B회사)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하여 회사(선원)와 재해보험사업자간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1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어선원의 요양 및 재요양보상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관련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제71조)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 및 재요양 보상금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규정(제127조제3항)이 있음.
- 14) 해양수산부는 보험요율 인상 및 운영에 대해 선사 및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현재도 사고율이 높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선원 보험만 국비 지원 기반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음.
- 15) 해양수산부는 국제법과 관련 해사노동협약이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으며, 국제보험에 가입한 선사는 재요양에 관련 상품을 별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임.
- 16)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 17) 「선원법」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